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순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83

제안연월일 : 2025년 5월 16일
제 안 자 : 권영애, 김육영, 소형준, 양순임, 오중균, 이용진, 임태근,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

1. 제안이유

적용범위를 성북구청 청사 부설주차장으로 한정하고 있는 기존 조례에 성북구의회 청사 부설주차장을 포함하여 공공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적용범위를 성북구청 청사에서 성북구의회 청사를 포함하는 공공청사로 규정(조례명 및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성북구의회 청사 부설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협의 절차 규정(안 제3조제2항)

다. 성북구의회 청사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대상 결정 시 별도 근거 규정(안 제5조제2항)

라. 성북구의회 청사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결정 시 별도 근거 규정(안 제6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사전협의 : 의회사무국

라. 입법예고 : 2025. 5. 20. ~ 2025. 5. 26.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청사”를 “공공청사”로 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부설주차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 성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청사 주차장으로 한다.

제3조(종전의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성북구청장은 구청사”를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청사”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의회 청사 부설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성북구의회 의장(이하 “구의회 의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의회 청사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대상은 구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종전의 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의회 청사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구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주차장을 위탁 운영 중인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가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공공청사---------- ---------- ---------- ---------- ---------- --------.
<신 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부설주차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 성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청사 주차장으로 한다.
제2조(주차장 운영)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구청사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 관리·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다만, 필요시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3조(주차장 운영) ① -------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청사 ---------- ---------- ----------. ---------- --.
<신 설>	② 구의회 청사 부설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

	청장이 성북구의회 의장(이하 “구의회 의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조 (생 략)	제4조 (현행 제3조와 같음)
제4조(주차요금 징수대상) (생략)	제5조(주차요금 징수대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구의회 청사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대상은 구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주차요금) ① (생 략)	제6조(주차요금)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구의회 청사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구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6조·제7조·제8조 (생 략)	제7조·제8조·제9조 (현행 제6조, 제7조 및 제8조와 같음)